



뉴스홈 > 경제

Tweet 0 Like 0 크게 작게 프린트 이메일

H-1B를 대신할 수 있는 비자

이동찬 이민 변호사

입력일자: 2013-04-18 (목)

올해 H-1B 취업비자는 이민국에서 4월에 서류접수를시작하자마자 H-1B 비자의 할당수보다 많은 수의 H-1B비자 서류가 접수됨으로 일찍 마감되었다.

이민국은 추첨을통해서 당첨이 된 신청자의H-1B 비자 서류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다고 4월 5일에 발표했다. 이민국은 2008년 이전에 시행했던 추첨 제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. 2012년에는 6월에, 2011년에는 11월에, 2010년에는 2011년 1월에 H-1B 비자가 소진되었었는데 올해에는 4월첫째 주에 H-1B 비자가 소진되었다. 올해 H-1B 비자가 접수가 되기 전부터 일찍 소진이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전망이있었다.

H-1B 비자가 일찍 마감이되었으므로 H-1B 비자 신청서를 시간에 맞춰 접수 못하였거나 추첨에 떨어진 비자신청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. 한국 사람들은 주로 J-1 비자, E-2 종업원 비자, L-1주재원 비자, O-1 대단한 능력소유자 비자, 또는 취업이민등을 선택한다.

J-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이다. J-1 비자를 통해 외국인인턴사원 또는 수습직원으로 스폰서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. 인턴사원은 J-1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수습직원은 총 1년반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. 그리고 J-1 비자는 H-1B 비자와는 달리 기준임금이 없다.

H-1B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일단 J-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배우며 J-1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H-1B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. 요즘 J-1 비자를 받으면 2년 해외체류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나중에 H-1B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J-1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H-1B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.

J-1 비자가 불가능하다면 E-2 종업원 비자도 고려할 수 있다. 그러나 E-2 종업원 비자는 회사가 E-2 사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. 그러나 예외로 미국에 있는 스폰서 업체들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지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E-2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다.

그리고 보통 E-2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투자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E-2 종업원 비자는 신청자가 E-2 사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간부 또는 꼭 필요한 기술자로써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. 그리고 E-2 종업원 비자는 H-1B 비자처럼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.

만약 스폰서 회사가 E-2 사업체가 아니라면 L-1 주재원 비자 또한 고려 대상이다. 그러나 반드시 외국에 계열사가 있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1년을 신청자가 외국 계열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. 그리고 L-1A 간부로 비자를 받는 경우 직원숫자가 아주 중요하다. 적어도 6-8명 정도의 하급직원이 미국 회사에 있어야 회사 간부로 L-1A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. O-1 비자는 대단한 능력 소유자에게 주어진다. 만약 외국인이 아주 특별한 기술 또는 재능이 있다면 O-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.

O-1 비자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국제적인 상을 받은 기록, 전문잡지 또는 매체에서 비자신청자를 소개한 글, 다른 사람의 실적을 심사한 기록, 다른 전문가들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기록 등이 필요하다.

많이 본 기사

- 중국 부유층 미국 등으로 '이민
- "이제 사회로" 주요 대학들 일제
- 한국 송금도 세금
- 자격미달 학생 입학 수도록
- UC어바인서 아시아계 남성 칼부림
- [집중 취재] 거세지는 명품 짝퉁
- 아케디아 주택침입 가족유고 강도짓
- 중산층 주립대 학비 확 깎아준다
- 가주 고액세금 체납 한인 15명
- 한인남매 '전국 탐'

변화로 가득한 길, 자신 있게 달린다
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Camry

[보러가기](#)

TOYOTA CAMRY
선택 사양 전시 ©2013 Toyota Motor Sales, U.S.A., Inc.

라디오 서울 뉴스

- 우래옥, 판매세 56만 달러 체납
- 20대 남성 UC서 칼에 찔려
- 국민생활체육 미주 배드민턴, 테니
- 전기회사 사칭, 사기 행각 주의
-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 3명 사망
- 라디오서울 주말연예
- 오바마 케어, 가주는 얼마나 드나

생(生) 로얄젤리!

변화로 가득한 길, 자신 있게 달린다
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Camry

[보러가기](#)

TOYOTA 함께 달리는
선택 사양 전시 ©2013 Toyota Motor Sales, U.S.A., Inc.

위에 언급된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취업이민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.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하려면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의 5년 경력이 필요하다. 취업이민2순위로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. H-1B 비자를 4월에 신청했을 때 10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취업이민도 시간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. 취업비자를 받는 것 대신 영주권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다.

위와 같이 설명했듯이 H-1B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.

(213)291-9980

- AD Law Firm Web Design 개발문의
- AD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
- AD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
- AD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-Newspaper
- AD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...
- AD E-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...

[홈으로](#) |
 [회사안내](#) |
 [게임월드](#) |
 [한인업소](#) |
 [구독신청](#) |
 [배달사고 접수](#) |
 [Place an AD](#) |
 [독자의견](#) |
 [안내광고신청](#) |
 [광고안내](#) |
 [라디오서울 생방송](#)



THE KOREA TIMES | [신문속한국](#) | 서울경제
[소년한국일보](#) | [hankook1.com](#)

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(기사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, 무단 전재·복사·배포 등을 금합니다.
 COPYRIGHT © 1997-2011 [Koreatimes.com](#) ALL RIGHTS RESERVED. [CONTACT](#) FOR MORE INFORMATION